

검정시행장 지정신청서

(앞쪽)

접수번호		접수일		처리기간 7일	
신 청 인	업 소 명				
	대표자 성명			생년월일	
	주 소			전화번호	
검정시행장 신청	명 칭			규 격	
	소재지				
관리수의사	성 명				
	주 소				
시설규모	면 적		대 지 : m ² , 검정시설 : m ²		
	○ 축종별 사육시설 규모: ○ 소독시설: ○ 관리시설: ○ 기타시설				

「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」 제33조제2항에 따라 검정시행장으로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.

이
의
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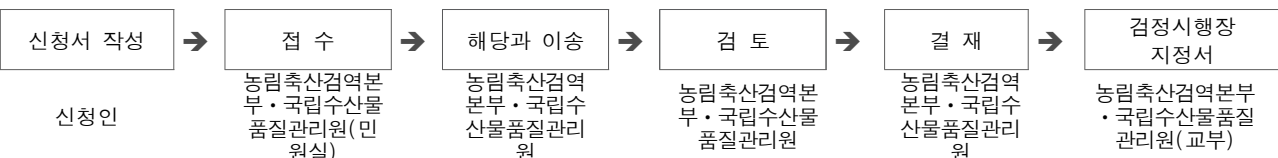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농림축산검역본부장 ·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

구비서류	신청인(대표자) 제출서류	1. 검정시행장의 위치도 및 시설배치도 각 1부 2. 임대계약서(토지대장 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) 1부 3. 검정시행장 시험동물공급계획 등 운영계획서 1부	수수료 없음
	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토지(임야)대장	

처리절차



검역시행장 지정 신청 안내

제출하는 곳: 농림축산검역본부 또는
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

처리기관: 농림축산검역본부 또는
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

근거법령

- 「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」 제33조(생물학적 제제의 출하승인)
 - 생물학적제제의 출하승인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출하승인기관의 시설 외에 검정 실시에 적합한 동물사육시설을 국가검정시행장소(이하 "검정시행장"이라 한다)로 지정하여 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.
 - 제1항에 따른 검정시행장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자가 검정시행장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검정시행장 지정신청서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·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.
 - 농림축산검역본부장·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위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현지 확인을 하고,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7호서식의 검정시행장지정서를 교부합니다.